



# 제품안전기본법 시행에 따른 대응



전자제품PL지원센터 사무국장 하 동 열

## I. 서론

지난 '08.11.14 배은희 한나라당의원외 대표발의 하여 '09. 12. 30 국회 본회의를 통과, '10. 2. 4 “제품안전기본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이어 시행령안, 시행규칙안이 금년에 기술표준원에서 제정고시하여 현재 국무회의 결정을 남겨 두고 있다. 동 법은 '11. 2. 5부터 전면 발효되어 있어 이와 관련 전기용품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들은 제도시행에 앞서 충분한 법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하겠다.

종을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제품 안전사고의 예방 및 효과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였다. 기존의 개별법에 의한 규정에서는 제품리콜 및 언론 공표, 사고제품 조사 등의 실질적인 제품 안전관리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개선, 수거 등의 명령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시·도지사의 권한이나 행정조치에 매우 소극적이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통일된 제품안전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개별법간 공동 달성을 위한 기본법 제정이 추진되게 되었다.

## II. 제품안전기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 1. 제품안전 기본법 제정 배경

현재 제품안전관리 체계는 개별법에 따라 제품의 제조·출하단계의 안전관리에 집중되어 있다.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서는 안전인증으로 53종, 자율안전으로 93개 품목을 관리하고 있으며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서는 안전인증 14종, 자율안전 47종과 품질표시 30종, 보호포장 7

2008년 11월 14일 한나라당 배은희 의원이 대표발의에 이어 환경부, 공정위 등 6개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같은 해 11월 26일 지경위와 12월 28일 법사위의 심의 의결을 거쳐 같은 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드디어 제품안전 기본법이 2010년 2월 4일 공포되었다. 2011년 2월 5일부터 발효를 목표로 금년에 기술표준원에서는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을 마련 지난 7월 28일 공청회 등을 거쳐 소비자단체, 제조업체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현재 국무회의 의결을 남겨 두고 있으며 내년 2월 5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참고로 주요 국가의 제품안전 제도는 다음과 같다.

〈표 1 미연방항공청 항공전자 TSO 고시 내역〉

구분	미 국	일 본	영 국
기관명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	경제산업성(METI) 제품평가기술기반기구(NITE)	건강안전위원회(HSE)
관련법	소비자제품안전법	소비생활제품안전법	건강안전노동에 관한 법
주요 업무	• 제품유통 중단 • 리콜권고, 명령	• 리콜 • 체제정비명령	• 모든제품 안전성 조사 • 사업자에 리콜의무
제도 시행	1999년	2007년	1994년

제품안전기본법의 주요내용은 첫째, 중대결함이 있는 제품은 리콜 명령과 동시에 사실을 언론에 공표하고 둘째, 제품 위해사실을 인지할 경우, 사업자의 보고 및 자발적 조치 의무규정, 셋째, 위해제품 수거 비용을 해당 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넷째는 제품사고의 원인분석과 재발방지를 위한 사고조사센터 지정, 운영, 다섯째, 제품안전협회 설립, R&D지원 법적근거 마련 등 제품안전체계 정비이다.

## 2. 조항별 주요 내용

### 가.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법률 제7조에는 제품안전정책 목표, 제품안전기반 조성, 제품사고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제품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으며 시행령안 제2조에서는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 및 시도지사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며 수립된 종합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다.

### 나. 안전성 조사

법률 제9조에는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위해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안전성 조사를 한 경우, 그 조사내용과 결과를 보관하여야 하며,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게 이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시행령 제4조, 제5조에서는 안전성조사를 위한 샘플링, 시험검사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안전성 조사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해당 사업자 및 인증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게 되어 있으며 안전성 조사결과는 3년간 보관하고, 해당 사업자가 안전성 조사결과를 열람하고자 할 경우 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 다. 제품수거 등의 권고

법률 제10조에서 위해성이 경미한 사항은 제품수거 등을

권고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만약 이를 해당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따르지 않는 경우, 제품수거 등을 명령하고 그 사실을 언론 또는 자사 홈페이지 등에 공표토록 하고 있다. 여기서 수거 등의 의미는 개선조치, 수리, 교환, 환급, 수거, 파기, 제조 유통의 금지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의미한다. 권고를 이행한 사업자는 조치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와 관련 시행령 제6조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품수거 등을 권고하는 경우 서면으로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때 제품명, 상표, 모델명, 권고의 사유 및 내용, 수락여부 통지기한, 수락 거부시의 조치 등이 명시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권고의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 라. 제품수거 등의 명령

법률 제11조에서는 다음의 경우 제품수거 등을 명령하고 그 사실을 공표하게 되어있다. 안정성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않는 경우, 중대한 결함으로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이다. 명령을 이행한 사업자는 조치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제품을 수거하며 이때 발생한 제품수거 비용은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 시행령에서는 제9조에 중앙행정기관의장은 제품수거 등을 명령하는 경우 서면으로 제품명, 상표, 모델명, 명령의 사유 및 내용, 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수거방법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게 되어 있다.

### 마. 공표의 방법

시행령안 제7조, 9조에서 제품수거 등의 권고·명령의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제품명, 상표, 모델명, 해당제품의 일련번호 또는 로트번호, 권고 또는 명령의 사유 및 내용, 권고·

명령 이행 의무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이 게재되도록 하였다. 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안전인증기관, 소비자단체의 정보통신망 또는 신문, 방송 등을 통하여 공표토록 하게 하였다.

#### 바. 중대한 결함의 범위

시행령안 제10조에서는 제품의 안전성이 결여되어 다음의 위해가 우려되는 결함을 명시하고 있다, 사망, 전치 4주 이상의 골절·질식·화상·감전 등의 부상이나 질병, 그리고 화재를 야기한 제품결함, 이때 제품외부로 불꽃 등이 번져 화재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제품결함을 포함하는 내용을 덧붙였다. 이밖에 어린이용품에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경우이다.

#### 사. 제품수거 등의 결과보고

시행령안 제8조, 제11조에서는 제품수거 등을 이행한 사업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조치결과를 보고하게 하여 수거 등에 대한 권고 또는 명령사항, 수거 등의 내용과 실적, 수거 등을 이행하지 못한 제품에 대한 조치계획 등을 보고하게 하였다.

#### 아. 권고 등의 해제 신청

법률 제12조에서는 제품수거 등의 권고·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30일 이내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때 사업자는 해제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하다.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권고·명령의 일부 또는 전부의 해제 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있으며 이는 30일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시행령안 제13조에서는 사업자는 권고·명령 해제신청서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으며 이때 신청인의 이름, 생년월일 및 주소, 사무소의 소재지와 연락처 그리고 해제신청 대상이 되는 권

고·명령의 내용, 해제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게재토록 하고 있다. 또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거 등의 권고 또는 명령에 대한 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토록 하고 있다.

#### 자. 사업자의 제품 자진 수거

법률 제13조에서는 사업자가 자사제품의 중대한 결함을 인지하였을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자발적으로 제품수거 등을 이행하게 하고 있으며 제품수거 등을 자발적으로 이행한 사업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조치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게 되어 있다. 이와 관련 시행령안 제14조에서는 사업자는 제품의 위해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품수거 등의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으며 이때 해당제품의 정보, 결함내용 및 원인, 발생위해 및 주의 사항, 수거 등의 조치방법 및 기간 등을 명시토록 하고 있다. 사업자는 시정조치 후, 그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거 등의 내용과 실적, 수거하지 못한 제품에 대한 조치계획, 재발방지 대책 등을 보고하도록 하였다.

#### 차. 제품사고 관련 자료제출 요청, 사고조치 방법

법률 제15조에서는 제품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원인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해당 사업자에게 사고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 시행령안 제15조에서는 사업자에게 해당제품의 제조·설계에 관한 사항, 해당제품의 제조·유통량, 사고원인 파악에 필요한 자료 등의 자료범위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사업자는 자료제출을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시행령안 제16조에서는 제품사고에 관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조사가 가능토록 하였다. 제품사고와 관련된 시설,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 사업자 또는 소비자에 대하여 제품사고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필요시 사업자 및 점유자로부터 사고제품의 인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

의장은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게 하였다.

#### 카. 사고조사센터의 지정

법률 제15조에서는 제품사고조사를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를 사고조사센터로 지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 시행령안 제17조, 18조에서 다음의 사항을 만족하는 분야별 전문기관 및 단체를 사고조사센터로 지정한다고 되어 있다.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을 것, 제품의 사고조사 및 위해성 평가를 위한 전문성을 갖출 것, 사업자로부터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받지 아니하고 그 조사활동과 독립적인 기관으로 명시하고 있다.

#### 타. 기타 법률조항

법률 제14조의 경우 내부자 신고와 관련 사업자가 제품결함의 내용을 은폐할 경우 사업자의 고용인이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자는 신고를 이유로 해당 고용인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없되며, 불이익을 당한 고용인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 불이익 처분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의장은 해당 사업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법률 제18조는 제품안전 연구 등의 출연으로 중앙행정기관의장은 제품안전 연구와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법률 제21조는 제품안전협회의 설립에 관한 내용을 기술 되어 있다. 시행령안 제27조에서는 권한의 위임과 위탁 내용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기술표준원장 및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되어 있다. 제품수거 등의 권고 및 공표, 제품수거 등의 조치 및 비용징수, 제품수거 등의 권고,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 과태료의 부과 징수 등을 위임할 수 있다. 또한 다음의 내용에 대해 지식경제부장관은 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품안전사고 등 통계의 작성, 안전성조사, 사고제품의 조사, 사고조사센터

의 지정, 제품안전정보망의 운영, 제품안전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제품안전 연구 등에 관한 출연, 제품안전에 관한 협력 등이다.

또한 법률 제26조에서는 벌칙의 내용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경우 제품수거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자(법제11조 제1항), 제품자진수거 등을 하지 아니한자(제13조 1항,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자(제23조 제2항)를 명시하고 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는 직무상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목적의 사용(제23조 제1항)한 경우 벌하는 것으로 하였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내부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고,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제14조 제2항)에 해당된다. 법률 제27조는 과태료와 관련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경우 제품사고 관련 자료제출 요구에 특별한 사유 없이 불응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제품수거 등의 결과 등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가 제품의 중대결함 내용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제품수거 실적 등의 사항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한국제품안전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행령안 제28조에서는 과태료 부과절차로 위반사실 및 과태료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게 하였으며 이때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 진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III. 결 론

제품안전기본법 및 하위법령 등이 제정되어 2011년 2월 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사업자들은 소비자들에게 제품안전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비록 일부 중소기업체들에게는 경영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글로벌 세계화속에서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제품안전에 대한 선진 세계국가의 제품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제조업체에서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제품설계 과정에서부터 제품안전 설계 등과 함께 정부 기관들은 영세한 중소기업에 대한 충분한 제도홍보 및 기술지원 등 정책지원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법의 취지와 함께 행정절차 및 시험조사센터, 통보기간, 벌칙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충분한 숙지를 통해 본격 시행에 앞서 충분한 대비를 갖추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선진국가의 경우 리콜제도가 보편화되어 제품결함이 발견된 경우 제조업체서는 이를 신속히 언론 등에 공표하고 A/S 등을 통한 소비자들의 제품안전에 신경을 쓰고 있으며, 소비자들도 이에 적극 동참 리콜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다. 반면 국내의 경우 제조업체에서 리콜관련 신문, 방송 등에 공표할 경우 소비자는 물론 언론기관에서는 해당 제품 외에 기업전체에 대한 기술 및 제품평가로 이어져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갖는 현상을 갖게 되어있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는 리콜이 필요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선뜻 대외 리콜발표를 꺼리게 되고 이와 더불어 소비자들의 제품안전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게 되어 리콜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되고 있지 않고 있다. 이번 제품안전기본법의 전면 시행을 통해 리콜제도에 대해서도 제조업체와 소비자 모두 건전한 소비문화가 정착되고 그로 인해 건전한 소비문화가 우리 사회에 다져지기를 바란다.

